



김 원 중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장기요양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80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한국의 경우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한국의 후기고령인구 구성비는 선진국의 후기고령인구 구성비를 넘어설 전망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노인성 질환 중 치매유병률은 노인인구 100명 중 8.8명에 이른다. 이들 중 2.2명은 치매고위험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와 후기고령인구의 급증, 치매유병률의 증가는 노인 자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속한 가구단위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어디 아픈 곳 없어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막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게 되면, 노인 자신도 가족도 당황하게 된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기능과 건강호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

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데 따른 국민적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08년 7월 이후 3년 연속 등급판정 갱신기록이 있는 요양서비스 이용자 총 23천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상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요양등급은 2.38등급에서 2.43등급으로 개선되었고, '10년 4-5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재등급판정 결과에서도 약 16%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망상, 밖으로 나가려 함, 길잃음, 부적절한 웃입기 등)과 의사소통장애가 호전되었다. 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욕창발생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입원일수 감소 역시 재가기관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실금·도뇨관리·경관영양 등 간호처치 분야는 다소 악화되어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간 연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는 2010년 7월 현재 요양보호사 22만명 및 교육기관 종사자

등 관련인력 4만명까지 총 26만여명에 이르며, 복지용구 등 경제 전체에 파급된 산출효과 분석 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0년 한 해 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연간 총 1,475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기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2010년 7월 현재 약 31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8%에 이르나 이는 2005년 일본(16.8%)과 독일(11%)의 경우 보다 낮은 수치이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최중증 어르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기에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단순히 대상자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노인들의 기능상태 악화방지 및 기능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과(Outcome)지향적 제도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 품질 성과(Coverage)』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원거리 교통비 개선, 가족요양비 지급요건 개선 등 장기요양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상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

들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재정 성과(Sustainability)』 측면에서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재가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특히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역량 성과(Competence)』 측면에서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Ageing in Place)를 위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종합재가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를 실질화하고, 요양시설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목적으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PACE나 EU의 Interlink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재가급여-지역사회서비스-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의 노력과 가정을 포함한 민간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 우리사회 전통문화로서 효(孝)가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돌봄(Care)시스템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때 세계적 선진 우수요양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경희**